



명모크공사(MECS, Inc.)와 홍보즈 등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31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중국 상해시 고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09)沪高民三(知)终字第112号
판결 일자	2010년 3월 9일	판결 결과	상소 기각 (권리자 패)
원심원고(상소인)	명모크공사(영문명 MECS, Inc.) (미국계 외자기업)		
원심피고(피상소인)	1. 홍보즈, 2. 쉬엔다 실업 집체 유한공사, 3. 상해 아오 거리 환경보호 공정 유한공사, 4. 저장 지에청 화학 공정 유한공사, 5. 저장 쑹청 화공 유한공사, 6. 저장 룡청 지주 유한공사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부정당경쟁법 제10조, 최고인민법원 민소소송 증거에 관한 약간의 규정		
영업비밀	열회수 시스템(HRS) 제조방법		
키워드 (Keyword)	기술감정(技术鉴定), 새로운 증거(新证据), 동일성(相同)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 명모크 공사는 1969년 설립된 미국공사로, 열회수시스템(HRS)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원심 피고 홍보즈는 원심 원고의 전신인 몬산토 환경 화학 계통 공사에 근무하면서, 관련 기술을 접촉하였고, 잡지에 <몬산토공사의 황산 신기술>이라는 글을 발표한 적도 있다.

원심 피고들 홍보즈, 쉬엔다공사, 아오거리공사, 지에청공사, 쑹청공사, 룡청공사의 황산공업 저온 여열 이용의 획기적인 기술로 DWHS 기술로 칭해진다. 원심 원고 명모크 공사는, 원심 피고들의 DWHS 기술이 자신의 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 법원이 명모크 공사의 HRS 기술이 상업비밀임은 인정하였으나, HRS기술과 DWHS 기술의 비교한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양쪽 기술은 다르고, 그밖에 원심 피고들이 명모크 공사의 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명모크 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명모크 공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것이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상소인)	⇒	⇐	원심 피고(피상소인)
명모크 공사는 HRS기술과 그 기술과 관련한 설비,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보유한다. 명모크 공사는 영업비밀에 속하는 경영비밀도 보유한다.			원심 피고들의 DWHS 설비는 명모크 공사의 HRS기술과 동일하지 않다. 원심 피고들의 DWHS 기술은 자체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이다. 원심 피고 홍보즈는 명모크 공사의 기술비밀보호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04 판결 요지

원심 원고가 주장하는 기술비밀 중 일부 공지기술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술에 대해서는 비공지성이 인정되므로 원심 원고는 영업비밀을 보유한다.

하지만, 원심 피고들의 DWHS 설비는 원심 원고가 주장하는 기술비밀과 다르고, 원심 피고들이 원심 원고의 기술비밀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원심 피고들이 상소심에서 미국 공사들의 서면 증언 및 우씨리마공사의 이메일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약간의 규정>에 규정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이 채택할 수 없다.

결국, 원심 원고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05 Key Point

소송에서는 적시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 된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 원고 문산토공사가 2심에서 다른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본 사건 이외의 사람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자료가 소송 전에 이미 형성된 것이거나 혹은 1심 단계 중 수집 가능한 것은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약간의 규정>의 '새로운 증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소심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3심을 원칙으로 하는 한국 법원의 민사소송 제도 하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2심 변론 종결시) 까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법원의 민사소송은 2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 사건과 같은 법원의 태도를 고려하여 1심 단계에서 수집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여 둘 필요가 있겠다.